###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9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 허은아·추경호·한무경

金炳旭・태영호・김정재

송언석 · 홍문표 · 황보승희

하태경 · 이명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1세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싸이월드'의 폐업 위기로 이용자가 회수하지 못한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는 경우 보관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전송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제8호 중 "제39조의15"를 "제39조의16"으로 한다.

제28조의7 중 "제39조의8"을 "제39조의9"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를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제39조의8에 따른 전송"으로 한다.

제39조의8부터 제39조의15까지를 각각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6까지로 하고, 제3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14(종전의 제39조의13) 본문 중 "제39조의12"를 "제39조의13"으로 한다.

제39조의8(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이용자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일 것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 외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 다.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정보일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 나 가공한 개인정보가 아닐 것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 정보의 전송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 2.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전송 및 전송 거부·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6(종전의 제39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제39조의14"를 각각 "제39조의15"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9조의12제2항"을 "제39조의13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호 및 제4호의4부터 제4호의6까지 중 "제39조의14"를 각각 "제39조의15"로 한다.

제73조제1호의2 중 "제39조의14"를 "제39조의15"로 한다.

제75조제2항제4호·제12호의2·제12호의3 및 제12호의5부터 제12호의7까지 중 "제39조의14"를 각각 "제39조의15"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8을 제12호의9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의9(종전의 제12호의8) 중 "제39조의12제4항"을 "제39조의13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9조의9제1항"을 "제39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11제1항"을 "제39조의1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11제1항"을 "제39조의1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의12제2항"을 "제39조의13제2항"으로, "제39조의12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의8제4항"으로 한다.

12의8. 제39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	사항 등) ①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8조의6, 제34조의2, <u>제39</u>	8
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u> 조의16</u>
관한 사항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	
의6부터 <u>제39조의8</u> 까지의 규정	제39조의9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①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	
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 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39조의8에	따른	<u> 전송</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8(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① 이용자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이용자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일 것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 외의 자로부터제공받은 개인정보

- 다.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정보일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 성하거나 가공한 개인정보가 아닐 것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 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개 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전송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제39조의9(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생략)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생 략)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생 략)

(생 략)

의 보호) (생 략)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개인정 보를 전송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의 개 인정보 전송 요구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전송 및 전 송 거부·정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통지) (현행 제39조의8과 같음) 제39조의10(손해배상의 보장) (현 행 제39조의9와 같음)

제39조의11(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현행 제39조의10과 같음)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9조의12(국내대리인의 지정) (현행 제39조의11과 같음)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 제39조의13(국외 이전 개인정보 의 보호) (현행 제39조의12와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 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 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u>제39조의14</u>(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생 략)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u>제39</u>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같음)
<u>제39조의14</u> (상호주의) <u>제39조의13</u>
<u>_</u>
<u>.</u>
제39조의15(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현행 제39조의14와 같
<u>♦</u>
<u>제39조의16</u>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u>.</u>
1
1.
1. <u>제39조</u>

를	포함형	난다)를	위반	하여	개
<u>و</u> ا ح	정보를	이용·저	게공하	경우	

-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수집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u>제39조의1</u>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 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6조제4항(<u>제39조의14</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 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u>제39조의15</u>
3제39조의1
<u>5</u>
4 <u>제39조의15</u>
5
<u>제39조의15</u>

-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 ⑧ (생 략)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 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 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6	
7. 제39조의13제2항	- 
② ~ ⑧ (현행과 전 제71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15	제39조의
<u>10</u>	

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 4의3. (생 략)	3.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	4의4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	
은 자와 <u>제39조의14</u> 에 따라	<u>제39조의15</u>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	
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	
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제39조의3제1항( <u>제39조의</u>	4의5 <u>제3</u> 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15</u>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 <u>제39조의</u>	4의6 <u>제39조의</u>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15</u>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	
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	

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를 수집한 자 5. · 6. (생 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7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 2. · 3.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u>제39</u>
   <u>조의14</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 12. (생략)

12의2. 제39조의3제3항(<u>제39조</u>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_
5.·6.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_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39</u> 조의1	<u>5</u>
	_
2.·3.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u>9</u> -
	- , <u>, , , -</u> _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제39조의4제1항( <u>제39조</u>
<u>의14</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
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
한 자
12의4. (생 략)
12의5. 제39조의7제2항( <u>제39조</u>
<u>의14</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
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9조의7제3항( <u>제39조</u>
<u>의14</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
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 <u>제</u>
<u>39조의14</u> 에 따라 준용되는 경
ı

 12의3	- <u>제39조</u>
<u> 의15</u>	
12의4. (현행과 같음)	
12의5	<u>제39조</u>
<u>의15</u>	
10.1]0	
_	<u>제39조</u>
<u> 의15</u>	
 12의7	제
12의7 39조의15	<u>/  </u>
00-1-110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 12의8.제39조의12제4항(같은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3.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39조의9제1항</u>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u>제39조의11제1항</u>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한 자
-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 9. 제35조제3항·제4항, <u>제36조</u> <u>제2항·제4항</u> 또는 제37조제3 <u>항</u>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11. (생략)
- ⑤ (생략)

4
1. ~ 8. (현행과 같음)
9제36조
제2항·제4항, 제37조제3항 또
는 제39조의8제4항
10.・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